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
통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,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17384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,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정원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행정기관을”을 “행정기관(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)을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그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더라도 특정한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정부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정부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”을 “법 제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”을 “제4조에 따른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법 제2조제6항 후단”을 “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”으로, “4급 공무원”을 “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법 제2조제6항 후단”을 “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”으로, “4급 공무원”을 “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운영기간 연장은 1회로 하되,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

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중앙행정기관”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<u>행정기관을 말한다. 다만,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.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기관(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)을 ---. 다만, 그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 지역에 미치더라도 특정한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정부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</u>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제 등)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정부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, 그 명칭을 “○○직제”로 한다.	제4조(직제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법 제2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차관보) ①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·기획·조사·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보좌기관의 설치) ① ~

③ (생략)

④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4조(보조기관의 설치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·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·단장·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1조(차관보) ①----- 제4조에 따른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보좌기관의 설치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-----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-----.

제14조(보조기관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-----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3(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) ① (생략)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 월 이내로 <u>하되, 1회만 연장할 수 있다.</u> ③ · ④ (생략)	제29조의3(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 월 이내로 <u>하고 운영기간 연장은 1회로 하되,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1